였다. 만족도 9개 변수의 각 항목 값의 합을 평균으로 나누어 생성된 새로운 변수(종속변수)로 생성한 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133.736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인 R2=.645(조정된 R2=.641)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4개의 교육서비스요인 중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시설서비스, 인적서비스 모두가 학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곳은 표준화회귀계수가(β)가 .488, t값이 14.045(p<.001)인 시설서비스요인이었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6〉 교육서비스품질과 학생만족도 간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Gradient(B)	Standard error	ß	t-value	p
학생 만족	(상수)	3.268	0.27		122.237	.000***
	시설서비스	.379	0.27	.488	14.045	.000***
	교육서비스	.372	0.27	.443	12.748	.000***
	인적서비스	.261	0.27	.335	9.640	.000***
	복지서비스	.244	0.27	.318	9.149	.000***
R=.803, R^2=.645, Adjusted R^2=.641 F=133.746, p<0.001						

*p<0.05, **p<0.01, ***p<0.001

가설 2: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생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교육서비스 품질 4개 요인과 학생 이탈의도 항목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이탈의도 3개 항목 값을 합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새로운 변수(종속변수)로 생성한 후 적용하였고 교육서비스 품질요인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표 7〉 교육서비스품질과 학생이탈의도 간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Gradient(B)	Standard error	ß	t-value	p
학생 이탈 의도	(상수)	2.298	.049		46.463	.000
	시설서비스	.050	0.50	.057	.999	.319
	교육서비스	-.150	.050	-.171	-3.018	.003**
	인적서비스	-.044	.050	-.050	-.883	.378
	복지서비스	-.050	.050	-.057	-1.001	.318
R=.196, R^2=.038, Adjusted R^2=.025 F=2.972, p<0.05						

*p<0.05, **p<0.01, ***p<0.001

알아본 결과, F값은 2.972이고, 유의확률이 0.020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인 R^2=.038(조정된 R^2=.025)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교육품질서비스에서 교육서비스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교육서비스 요인이 학생이탈의도에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로 '교육서비스 품질은 이탈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곳은 표준화회귀계수가(β)가 -.171, t값이 -3.018(p<.05)인 교육서비스요인이었다.

가설 3: ' 학생만족도는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만족 6개 항목과 요인과 학생의 이탈의도 3개 항목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이탈의도 3개 항목 값을 합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새로운 변수(종속변수)로 생성한 후 적용하였다. 만족 6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F값은 7.071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정통계량인 R^2=.126(조정된 R^2=.108)로 나타났다.

〈표 8〉 학생만족도와 이탈의도 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Gradient (B)	Standard error	ß	t-value	p
학생이탈의도	(상수)	3.141	.217		14.5011	.000
	학과만족	-.334	.064	-.378	-5.207	.000***
	커리큘럼만족	.089	.072	.096	1.231	.219
	강의능력만족	-.006	.075	-.007	-.085	.932
	교수인간적만족	-.071	.066	-.078	-1.078	.282
	강의실만족	-.038	.063	-.048	-.609	.543
	실습실만족	.144	.061	.185	2.377	.018*
R=.355, R^2=.126, Adjusted R^2=.108 F=7.071, p<0.001						

*p<0.05, **p<0.01, ***p<0.001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학생만족이 학생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로 '학생만족이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학생만족 항목에서 '학과만족', '커리큘럼만족', '실습실만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학과만족', '커리큘럼만족', '실습실만족'을 높이면 전공전환이나 이탈의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국내 지방대학의 관광계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이 학생만족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문헌참고에서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기준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설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 대상지 대학학생들에게는 적합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Abdullah(2006)의 HEdPERF에서의 설문지 내용은 너무 세부적인 면이 많아 본 연구에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유리・차석빈(2008)의 논문에서 활용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설문항목이 학생들의 전반적 의견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분류로 4개의 요인(교육요인, 복지요인, 시설요인, 인적요인)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요인은 교과과정에 연관된 내용을 조사항목으로, 복지요인은 '등록금', '장학금', '정보제공' 등을, 시설요인은 '전공실습실'과 '기자재 설비' 중심으로, 인적자원은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관심'을 포함하였다 본문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에서는 4개의 서비스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를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4개의 교육서비스요인 중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시설서비스, 인적서비스 모두가 학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곳은 표준화회귀계수가(β)가 .488, t값이 14.045(p<.001)인 시설서비스요인이었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교육서비스 품질 중 특히 시설서비스 요인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서비스 요인으로 '전공실습실 구성', '강의실 내 기자재', '충분한 전공실습실', '강의실 환경' 등으로 구성하였다. 관광관련 학생들은 주로 전공과목이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실습실 또한 최근의 다른 대학에서 추구하는 전자 수업환경 구축과 비교할 때 미흡한 부분이 다수 학생들의 불만족스러운 태도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큰 영향을 보여준 교육서비스는 '체계적인 교과목 구성', '전공적합 교과과정', '이론과 실습 비중', '교내행사가 다양', '타 대학대비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전공 교과목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관련 학과의 경우 현재의 관광 발전방향을 담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구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미래 트랜드와 예측을 감안하지 않는 교과목 및 교과과정은 결과적으로 학과 뿐만 아니라 학교 경쟁력마저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생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교육서비스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교육서비스 요인이 학생이탈의도에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로 '교육서비스 품질은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탈학생들의 대부분이 입학 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을 했으나 본인들이 원치 않는 학교 및 학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서비스는 '체계적인 교과목 구성', '전공적합 교과과정', '이론과 실습 비중', '교내행사가 다양', '타 대학대비 체계적 교육과정' 등 전공 교과목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 학생만족도는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만족 6개 항목과 요인과 학생의 이탈의도 3개 항목 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만족이 학생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로 '학생만족이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학생만족 항목에서 '학과만족', '커리큘럼만족', '실습실만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결과적으로 '학과만족', '실습실만족' 은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관광관련학생들은 교육품질 서비스에서 보다 나은 시설서비스 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관련 학생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근무하길 원하고 있고 이들은 경험한 시설서비스는 졸업 후에 이들이 근무하게 될 서비스산업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시설서비스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대학에 진학을 했으나 본인들이 원치 않는 학교 및 학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한 경우 대학생활에 부정적 견해와 불만족으로 연결되고 종국에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 및 학과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학생들이 연계성을 갖고 수강할 수 있게 연계전공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학생이 원하는 방향의 교과목을 학생수요에 맞게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을 수동적인 수요자가 아닌 적극적인 수요자로 그들의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과만족', '실습실만족' 이 이탈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관광관련학과에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과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실습실 전체적인 학습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태도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현(2012). 대학 경호학과 서비스 품질이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9(2), 239-258.

김진옥(1996).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부제. 『대학교육』, 84(12), 120.

김정희・박동진(2009). 대학교육서비스가 학생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A국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47-68.

박주성・김종호・신용섭(2003). 대학교육 서비스품질 요인이 학생만족, 재입학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4(4), 51-74.

배수원(2006). 교육서비스 품질, 학생만족, 관계품질, 그리고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경대학교박사학위논문.

신재익・정기한(2007). 교육기관의 서비스품질, 학생만족, 구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7(1), 231-256.

양태식(2004). 대학의 교육서비스품질이 학생만족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지은・김대권(2008). 대학교육 서비스품질 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7(6), 221-239.

유연숙(2006). 교육서비스품질이 서비스만족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 비서관련학과 중심으로. 『경영논총』, 24(2), 33-60.

이경오・최덕철(2000). 대학교육서비스 마케팅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마케팅과학연구』, 6, 339.

이용기(1998). 시장지향성의 영향요인과 결과와의 인과관계. 국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경영학연구』, 27(3), 729-757.

이용기・장병집・박영균(2002). 대학 환경특성이 전반적 서비스품질, 서비스 가치와 학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4(1), 77-100.

이유재(2013). 서비스마케팅, 5판, 학현사, 서울.

이유재(2000). 고객만족경영의 개념과 실천에 관한 연구. 『경영저널』, 1(1), 153-172.

임은미・송미숙・이수진(2011).대학생을 위한 전공전환 준비도 검사의 타당성 검색. 『진로교육연구』, 24(1), 85-102.

장자(2012).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중대학생들의 고객만족도 비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유리・차석빈(2008). 교육서비스품질, 학생만족 및 학교충성도간 관계연구. 『관광연구』, 23(2), 139-155.

차석빈(2006). 재학생조사를 통해 본 산업정보대학원 활성화 연구.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과제

최규환(2004). 관광교육평가에 있어서의 구성개념 타당성 연구. 『경영연구』, 17, 103-119.

최지희(1998). PC통신 서비스산업의 고객이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호(2005). 교육서비스품질의 측정과 학생만족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복주・김재열(2002). 대학교육 서비스품질 측정과 학생인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마케팅학회지』, 춘계학술대회. 14-15.

Abdullah, F. (2006). The development of HEdPERF: a new measuring instrument of service quality for the higher education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0(6), 569-581.

Anton, J. (1996).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Making Hard Decisions with Soft Numbers. Prentice-Hall. Business and Management faculty,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8(2), 85-95.

Farrell, Dan. (1983). Exit, Voice, Loyality, and Neglect as Responses to job Dissatisfaction: A Multidimensional Scaling Stud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596-607.

Hawes, J. M. & Glisan, G. A. (1983). Marketing Approach to Student Evaluation of a Department of Marketing, AMA Educator's Proceeding, 30-45.

Keaveney, S. M. (1995). Customer Switching Behavior in Service Industri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arketing*, 59(2), 71-82.

Kelly, S. W. & Davies, M. A. (1994). Antecedents to customer expectations for service recovery,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2(4), 34-61.

Louise, M. (1980). Career Transition: Varieties and common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 329-340.

Lovelock, C. H. (1983). Classifying Services to Gain Strategic Marketing Insights, *Journal of Marketing,* 47, 9-20.

Oliver, R. L. (1997).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New York McGrow- Hill.

Parasuraman, A. Zeithaml, V. & Berry, L. L. (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12-40.

여가와 여가만족, 삶의 질의 관계

허중욱*

Ⅰ. 서론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하기 위하여 과거를 추억하며 신화를 만들고, 현재를 인내하며 향유하고, 신기루와 같은 미래를 기대하며 환영을 쫓는다. 인간은 현재를 음유할 때 과거를 추억하며 사실을 객관화하거나 미화시킨다. 또는 그것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된다. 인간은 현재 직면한 난점을 대처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여가에 참여하고 타자를 만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담화하며 담론을 형성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된다. 게다가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에 무지개가 핀 배경에 많은 풍선을 부상시키며 여러 가지 기대를 갖으며 현재를 반추한다.

이러한 특성은 post-tourist(PT)특성에서도 잘 나타난다(Smith, 2003: 35). 즉 PT는 종종 집에서 모의화된 경험을 즐긴다. PT는 관광과 여가와 라이프스타일간의 거의 분화가 없다. PT는 사실적인 진정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PT는 관광자 경험의 상품화를 재미있게 다룬다. PT는 경험과 상황으로부터 이율배반적인 초연함을 갖는다. PT는 실재와 환상 사이에서 분화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PT는'초현실(hyper-real)' 경험에 관심이 있다. PT는 연출과 환영을 수용한다.

이와 같은 관광자의 특성은 범위 면에서 상위의 개념인 여가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관광의 범역보다 시간적, 공간적, 활동 유형적으로 큰 범역을 갖는 여가활동에서는 삶의 음미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여가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세계건강기구 WHO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1946년 국제건강회의에서 제시하고 1948년에 발효하였다(WHO, 2016). WHO의 건강 정의에 의하면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감의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의 부재가 아니다. 이러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안녕감, 정신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건강 정의를 현대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 또는 공동적 관계 건강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건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관광연구들은 WHO 건강 정의 가운데 어느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신체적 건강인가? 정신적 건강인가? 사회 또는 공동체 관계 건강인가? 아니면 소비자행동에서 매출이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만족인가? 아니면 조직에서 생산노동인가?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행복을 희구하는 현대인의 인식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여가만족,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여가와 관광 분야 연구가 노동 중심의 기성 사회과학

*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부교수. hcuk@kangwon.ac.kr

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소비자행동, 관리전략 등으로 경도된 두 가지 측면에서 벗어나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연구(happiness sciences)로 자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와 이들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활동에 대칭하여 여가활동은 시간, 활동, 마음의 상태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 여가활동의 목적은 활동 그 자체가 본원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 타자의 시선과 관계의 확장 및 심화가 목표가 되는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한 여가 참여자가 지각하는 여가만족, 이들의 여가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생활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여가의 이상

여가의 서구적 개념은 고대 그리스 사회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와 그리스어 schole, 즉 "노동을 향한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상태"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Goodale & Godbey(1988)에 따르면, schole는 "삶의 지혜를 위한 탐색" 또는 "삶의 방법"이었다. 여가는 "그리스를 위하여 오직 그 삶이 적합하다"라는 문화적 관념이었다(deGrazia, 1962; Raychaudhuri & Samdahl, 2005: 1에서 재인용).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ctics)에서 노동과 여가 양자는 좋은 삶 속에서 필수적이며 "모든 좋은 행동의 제1 원칙은 여가이다"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는 우수성의 계발과 정치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모든 자유인이 이끌어야만 한다는 우수한 생활은 단지 여가 기간동안 발생되었다. 이것은 그리스 관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스 사회의 여가는 음악, 교육, 문화적 취미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보내는 선택된 소수인 엘리트에 관련된 것이었다(Raychaudhuri & Samdahl, 2005: 1). 즉 여가는 일(ascholia)과 어린이의 놀이(paideia)와 상이하다. 여가는 이해(학습)을 위한 탐색을 통하여 심미적, 영적 또는 지적인 깨달음(계몽)으로 이끈다(Torkildsen, 2005: 12-13).

이상과 같은 고대 그리스의 여가 관념을 통하여 볼 때 여가는 노동과 대칭되는 자유의 관념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자유라는 토대 위에 참여자가 활용하고 향유하는 시간, 활동, 마음의 상태를 지칭한다.

여가경험들은 생활만족을 보다 더 증진시킨다. 여기에는 여가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많은 편익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의 경험들은 커다란 도전들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들은 감상, 자기 성찰 그리고 또는 기분 전환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Edington, DeGraaf, Dieser &

Edington, 2006: 2).

2.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인간이 특정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크게 그 자체를 향유하려는 내재적 이유와 외부의 요구나 보상 또는 처벌에 따라 참여하는 외재적 이유가 존재한다. 실제 여가활동 참여사례에서 살펴보면 여가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즐거움, 기분 전환, 신체적 건강 또는 운동, 노동과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 자연을 즐기는 것 및 사회화 등이다(Ross, 1990: 2).

2012년에 실시된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약 5000명의 규모로 실시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식활동이 59.3%로 과반수 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취미·오락활동으로 20.9%, 스포츠 참여활동이 8.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식활동의 증가비율이 2010년 36.2%에서 59.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참여활동의 경우 2010년 7.3%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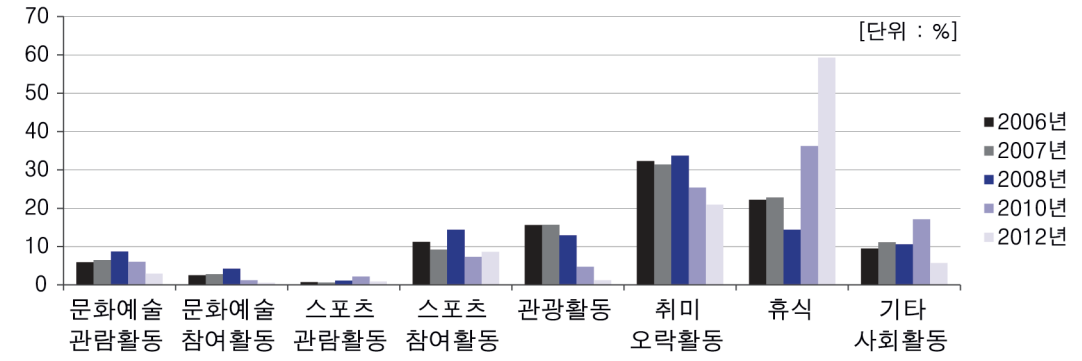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여가백서. p.31.

〈그림 1〉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추이

여가활동은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참여활동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 관람활동은 2008년을 기준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참여활동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08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에서 등락하고 있다. 관광활동은 2006년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미 오락활동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휴식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여가활동은 주로 취미 오락활동, 휴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추이

(단위 : %)

구분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	기타사회활동
06년	5.9	2.5	0.7	11.2	15.6	32.3	22.2	9.5
07년	6.5	2.8	0.6	9.2	15.7	31.4	22.8	11.1
08년	8.7	4.2	1.1	14.4	12.9	33.7	14.4	10.6
10년	6.0	1.2	2.2	7.3	4.7	25.4	36.2	17.1
12년	2.9	0.5	0.9	8.6	1.2	20.9	59.3	5.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여가백서. p.31.

여가만족은 개인들이 특정한 개인의 욕구들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부합되거나 만족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여가만족은 한 개인이 여가활동들과 선택들에 관여한 결과로서 형성하거나 끌어내거나 또는 얻는 긍정적인 지각 또는 느낌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그녀의 일반적인 여가경험들과 상황들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게 되는 정도이다. 이 만족의 긍정적인 느낌(감정)은 개인의 감지되거나 감지되지 못한 욕구의 만족으로부터 발생한다 (Beard & Ragheb, 1980: 22).

그 동안 여러 연구를 통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여가 참가자는 자신의 내재적 또는 외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여가만족은 자신의 건강에 유익하게 편익을 획득하고자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주관적인 느낌(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삶의 질

인간은 일상에서 환희와 자유를 갈망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존을 확인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환희와 자유는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일상에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행복을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단계별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객관적 요인들로 결정되며 또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결정된다. 여가활동은 삶의 가치들과 욕구들에 부합하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감정을 느끼며, 추가적인 기술들과 지식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Brajsa-Zganec, Merkas & Sverko, 2011: 81).

삶의 질(QOL)은 객관적 주관적인 양면이 존재하고, 각 축은 일곱 개 영역의 총합으로 형성된다. 즉 물질적 안녕감, 건강, 생산성, 친분, 안전성, 지역사회 및 감정적 안녕감 등이다. 객관

적 영역들은 문화적으로 객관적 안녕감의 관련된 측정을 포괄한다. 주관적 영역들은 개인에 대하여 그들의 중요도에 의하여 가중되는 만족감의 영역을 포괄한다(Cummins, Andelman, Board, Carman, Cummins, Ferriss, Friedman, Michalos, Samli, Shapiro, Sirgy, Vitterso & Veenhoven, 1998: 3).

이에 부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삶의 질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측정은 물질적 생활조건, 비물질적 생활조건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물질적 생활조건은 4개 영역, 비물질적 생활조건은 7개 영역과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희길·심수진·박주언·배현혜, 2013).

〈표 2〉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영역 구성비교

차원	삶의 질 측정	OECD(2011)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소비/자산	Income & Wealth
	고용/임금	Jobs & Earnings
	사회복지	
	주거	Housing
비물질적 생활조건	건강	Health Status
	교육	Education & Skills
	가족과 공동체	Social Connections
	문화와 여가	Work-life Balance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 Governance
	안전	Personal Security
	환경	Environmental Quality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자료: 이희길·심수진·박주언·배현혜(2013).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p. 21.

삶의 질에 대하여 연구는 여러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Pagan(2015: 557)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의하여 보고된 생활만족의 수준 상에서 여가활동 참여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여가활동의 참여가 장애인에 의해 보고된 생활만족 점수를 증가시켰지만, 이 효과는 여가활동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휴일, 외출 또는 문화행사 및 교회 참석과 같은 여가활동의 참석은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Brajsa-Zganec, Merkas & Sverko(2011: 81)은 여가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공헌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삶의 질과 여가활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가활동들에 참여는 주관적 안녕감에 공헌하며, 반면에 중요한 여가활동들의 유형은 연령과 성별 집단별로 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여가활동에 참여한 여가참가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여가만족, 삶의 질간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여가만족과 살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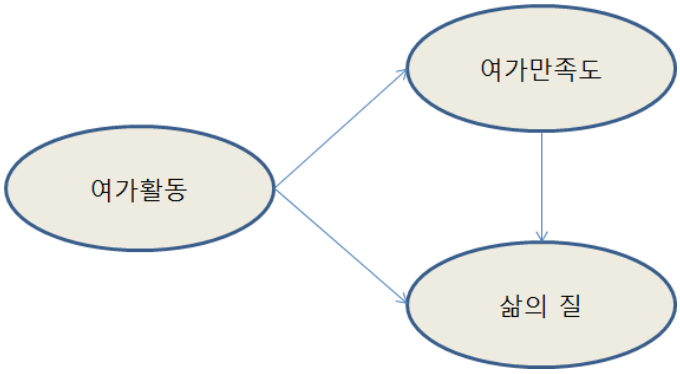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이 연구모형에서 도시된 내용을 명제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이 가설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여가참여자의 여가활동은 여가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여가참여자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여가참여자가 지각하는 여가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여가참여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서로 관심사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은 생애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심사,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문화적 토대가 다를 수 있고, 직접적인 관심사 또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한 변수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

서 생산한 2015년 사회조사 자료를 취득하여 이용하였다. 통계청에서 설계한 자료 가운데 이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삶의 질 등에 관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통계생산을 위하여 측정항목의 설계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측정항목이다.

레저시설 이용 횟수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4.5.14.-2015.5.13.) 다음의 레저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에 대해 이용 횟수를 모두 써 주십시오"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은 "관광명소(유적지, 국립공원 등), 온천장 및 스파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산림욕장(휴양림), 놀이공원, 수영장(워터파크 포함), 기타" 등에 대하여 각각 "00번"으로 응답을 하도록 설계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여가만족도 측정항목은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를 질문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측정항목은 기본적으로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를 질문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이 밖에 직업, 소득 등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기술통계, 평균차이 분석, 인과관계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여가활동에 참여한 여가참가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여가활동과 삶의 질, 여가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통하여 집단별로 여가만족, 삶의 질 등에서 평균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예상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여가참여자의 여가활동은 여가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참여자의 여가활동은 여가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설 2 "여가참여자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참여자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설 3 "여가참여자가 지각하는 여가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참여자가 지각하는 여가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여가활동과 삶의 질, 여가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van praag, Frijters & Ferrer-i-Carbonell, 2003; Brajsa-Zganec, Merkas, & Sverko, 2011; Pagan, 2015). 또한 여가활동, 여가만족, 삶의 질

변수는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별로 집단간 평균차이를 보여 성별 역할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생애주기,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Smith, M. K.(2003). Issues in cultural tourism studies. London: Routledge.

WHO(2016). WHO definition of Health. From http://www.who.int/about/definition/en/print.html.

deGrazia, S. (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Goodale, T. & Godbey, G. (1988). The evolution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ress.

Raychaudhuri, U. & Samdahl, D. M.(2005). Leisure embodied: examining the meaning of leisure from Greek and Vedic perspectives. 11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Canadian Association for Leisure Studies.

Edington C. R., DeGraaf, D. G., Dieser, R. B. & Edington, S. R. (2006).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foundational perspectives. Boston: McGraw-Hill.

Torkildsen, G.(2005).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London: Routledge.

Ross, J. H.(1990). A look at leisure. Edmonton: Planning Branch of Alberta Recreation and Parks.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여가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Brajsa-Zganec, A., Merkas, M. & Sverko, I.(2011). Quality of life and leisure activities: how do leisure activities contribute to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dicators research, 102: 81-91.

Cummins, R. A., Andelman, R., Board, R., Carman, L., Cummins, B., Ferriss, A., Friedman, P., Michalos, A., Samli, J., Shapiro, S., Sirgy, J., Vitterso, J. & Veenhoven, R.(1998). Quality of life definition and terminology: a discussion documen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of life studies.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of-life studies.

Pagan, R.(2015). How do leisure activities impact on life satisfaction? Evidence for German people with disabiliti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0(4): 557-572.

이희길·심수진·박주언·배현혜(2013).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서울: 통계청.

van Praag, B. M. S., Frijters, P. & Ferrer-i-Carbonell, A.(2003). The anatomy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eonomical behavior & organization, 51: 29-49.

사단법인 한국호텔관광학회 정관

일부개정 2008년 5월 24일
일부개정 2009년 4월 24일
일부개정 2009년 10월 31일
일부개정 2010년 4월 30일
일부개정 2011년 11월 5일
일부개정 2012년 5월 19일
일부개정 2013년 6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호텔관광학회"(영문명칭: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당기 회장의 활동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통해 호스피탈리티경영학 및 관광관련학문의 발전과 국가관광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대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스피탈리티, 관광, 조리, 외식산업에 관한 학술연구와 발표
2. 전항과 관련한 학술지발간·학술세미나, 강습, 강연회 개최
3. 국내외 호스피탈리티, 관광, 조리, 외식관련업체와의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수행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제 교류)

본 법인은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외학회에 참여하여 본 법인의 목적을 구현한다.

제6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 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의 제공)

본 법인은 제6조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①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대산업분야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② 국내외에서 환대산업관련분야의 석사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내외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환대산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평생회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3. (기관회원)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대표자

제9조(회비)

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평생회원비, 기관회원비로 하며, 회원은 연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다만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제10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이 제공하는 학회지·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공정하게 수혜할 권리를 가진다.
3.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은 이 권리에서 제외되며, 소속기관에서 퇴임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2년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지난 기간 동안의 누적회비 납부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되, 법원에 등재하는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이내(등기부회장 1인을 선임한다.)
4. 이사 150인 이내(업계 부회장 및 업계 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감사 2인

제16조(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임)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회장만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③ 수석 부회장의 선출은 현 회장과 동시에 선출하도록 한다.

제17조(이사와 감사)

① 이사는 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본 법인의 감사 2인을 선임한다. 해당감사는 본 법인의 기금관리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추천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1. 추천위원회는 총회에 차기 회장이 될 수석부회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2. 추천위원회는 회장, 전기회장과 회장 추천 1인, 전기회장 추천 1인, 이사회가 선출한 추천위원 5인을 포함, 정원 9인 이내로 하며, 회장이 위원장 겸 의장이 된다.
3. 선출직 추천위원의 자격은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회원으로, 통상 5년(휴면기간 제외)이상 학회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환대산업관련학과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회원이어야 한다.
4. 선출직 추천위원은 활동지역, 학문분야 대표성을 고려, 안배하여 이사회가 선출하되 이사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임기만료전에 추천위원회를 소집,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차기 회장 1인을 선출하고 총회에 이를 추천한다. 다만 인준이 거부되었을때는 추천위원회의 재추천 절차를 밟아 다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선출직 추천위원회는 매년 째 회계연도 개시 초에 이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모두 1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과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고문과 자문)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① 고문은 전임 학회장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월 전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 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최소 70인 이상의 정회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추인 및 감사의 선출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31조(총회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인 경우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10. 회칙개정의 발의
11. 추천위원의 선출

12. 수석부회장 인준
13. 회원의 가입의결
14. 회원의 상벌 및 제명결의
15. 고문의 추대
1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로 하며, 회비와 찬조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회비로 한다.

② 학회이름으로 프로젝트수주시 수주받은 회원은 연구관리비용으로 프로젝트총액의 **5%**를 납부해야 한다.

제36조(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평생회비의 적립)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출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학회업무전담자의 보수)

본 학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회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본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르되,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임기)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선출된 수석부회장의 회장승계는 전 정관을 따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6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서명부 별첨)

한국호텔관광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6월 29일 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호텔. 관광학회의 학회지(호텔관광연구)에 투고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연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와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도덕성)

① 연구자는 연구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덕성이란아이디어의 도출, 연구에 대한 설계, 연구와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회적 통념과 윤리적으로 그릇된 방법이 아닌 정직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그 진행절차를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기 표절, 타인 표절, 조작, 위조 또는 변조 등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잘못이 의심되는 행위 혹은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림과 동시에 적절한 대응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의 공유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진행 과정과 관련자료 및 연구결과물을 최대한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의 기여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공동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5조(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진행과 연구결과물 게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 성과물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도덕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윤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윤리에 반한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에 반한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학회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5년 이상 금지
-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한국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함
- 5년 이상 회원자격 상실 또는 `영구제명

⑦ 조사 결과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